

건축물 재난 안전을 위한 법령 개정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8.10.9.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8.11.26.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천·밀양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물에서 착화와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마감재로 기준이 강화된다.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대상을 '6층 이상(22m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에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하고, 필로티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가 피난층인 1층으로 피난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하였다.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문에 대해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 감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방화담퍼의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하였다.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 위치 등 구체적인 기준이 도입되고, 재실자의 피난과 관련된 일체형 방화셔터, 건축물 내 직통계단 등 시설에 대한 기준도 정비되었다.

그밖에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부과 수준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지진 안전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로티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포항 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 피난약자 이용시설로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이 포함된다.

**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